

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 강화 세부 계획 알림

2020. 5. 21. 법무부

①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및 재입국허가제 시행

가.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적용대상) '20. 6. 1.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
(국적 불문)
- (적용제외)
 - ⓐ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 ⓑ '20. 5. 31. 이전 재입국허가를 면제받아 출국한 장기 체류외국인*

* 재입국허가 면제기간 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에 한함

ⓒ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 (조치방법) '20. 6. 1. 이후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등록외국인 완전출국 처리 및 재입국 제한

※ 상기 적용제외 대상(ⓐ,ⓑ,ⓒ) 외국인은 기존대로 재입국허가 면제

나.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허가제 시행

- (적용대상)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
(국적 불문)
- (적용제외)
 - ⓐ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 ⓑ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 (허가방법)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서 및 사유서를 제출 받아 심사하되,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 관련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허가

※ 동의서 미제출자 또는 제출 거부자 재입국허가 불허

※ 체류·출국 목적 등에 비추어 재입국허가 필요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 발급 제한

→ 복수 재입국허가 발급은 제한하며, 단수 재입국허가만 발급

[2]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 (적용대상)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 (국적 불문)
- (적용제외)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및 재외공관 발급 '격리면제서' 소지자
- (조치방법) 재입국하는 모든 등록외국인(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외국인 및 격리면제서 소지자 제외)의 진단서 소지 여부 확인 및 미소지자에 대한 입국불허

< 진단서 관련 유의 사항 >

- 진단서는 현지 의료기관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 것만 인정함
-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 및 검사일시 (출발일 전 48시간 이내 검사 시에만 인정),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진단서에 코로나19 음성(Test Negative) 여부가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음. 다만, 음성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

[3] 시행일자 : '20. 6. 1.(월)

붙임1**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 관리 강화 방안 [요약]**

구분	기 존	개 선	비고
재입국 허가	출국 후 1년 이내 재입국 시 재입국허가 면제 (영주자격 소지자는 2년 이내 재입국 시 면제)	재입국허가 면제 중단 및 허가제 시행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시 외국인등록 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외교·공무·협정, 재외동포(F-4) 자격 및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 재입국허가 면제 혜택 유지
재입국 전 검사	재입국 전 건강상태 진단 절차 미비	현지 출발 전 48시간 이내 현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코로나19 관련 진단 필요 (발열, 기침,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 확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외교·공무·협정, 재외동포(F-4) 자격 및 격리면제서 소지자 (투자자, 기업인 등) → 입국 전 검사, 진단서 소지 및 제출 면제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제시 시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제시 의무 없음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항공기 탑승 시 및 입국심사 시 제시 필요 (미이행 시 입국 불가)	

재입국 전 진단 및 진단서 제출 동의서

(CONSENT FOR MEDICAL EXAMINATION AND
SUBMISSION OF DIAGNOSIS BEFORE RE-ENTRY)

< 아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외국인등록 말소 처리됨 >

<Re-entry permission shall not be issued unless you provide consent to the following terms. Leaving the Republic of Korea (ROK) without re-entry permission will result in cancellation of Alien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7-2 of the Immigration Act.>

재입국자는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고 해당 진단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소지하여 재입국하여야 합니다. 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유효한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탑승이 차단되거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하고, 공인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만 인정. 검사일자 및 검사자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발열·기침·오한·두통·호흡곤란·근육통·폐렴 증상 유무 기재 필요)

All persons who wish to re-enter the ROK shall undergo a medical examination for COVID-19 not earlier than 48 hours prior to the date of departure for the ROK and shall present a written diagnosis to an immigration officer. Failure to undergo the examination or hold a valid diagnosis report will result in re-entry denial. (Diagnosis reports shall be written in Korean or English and issued by an authorized medical institution. It shall include the date of examination and the diagnosis of fever, cough, chills, headache, difficulty in breathing, muscle pain, and pulmonary symptoms and shall be signed by a medical examiner.)

※ Persons who have the Isolation Exemption Certificate issued by a Korean embassy or consular office are exempted from medical examination and the obligation to submit a diagnosis report.

동의함/Agree 동의하지 않음/Disagree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입국허가는 불허됨

RE-ENTRY PERMISSION SHALL NOT BE ISSUED UNLESS YOU AGREE

일자 (Date)	2020년 (year)	월 (month)	일 (day)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